
신인드래프트 관련 주요 규정

2025. 6.

■ KBO 규약 제11장 신인선수 中

제105조 [신인선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어느 구단(외국의 프로구단을 포함한다)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선수를 신인선수라 한다.

제106조 [지명] 구단은 제11장에서 정한 KBO 신인 드래프트(이하 “신인 드래프트”라 한다) 절차에 따라 지명한 신인선수에 한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신인선수와는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07조 [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① 신인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7년간 KBO 소속구단과 감독계약 및 코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KBO 신인 드래프트 절차에 따라 지명 대상자가 되었으나 지명 받지 못하여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소정의 선수가 선수계약 체결금지기간을 도과하여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의 지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구단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선수에 대하여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연봉은 제71조 소정의 최저연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④ KBO는 제1항 소정의 선수가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년간 당해 선수가 졸업한 학교에 대하여 유소년 발전기금 등 일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신인선수 중 한국 프로야구에 등록한 사실이 없는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해외학교 출신) 선수는 연고지에 상관 없이 제110조의 지명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8조 [신인 드래프트] ① KBO는 매년 특정일자를 정하여 신인선수를 대상으로 한 신인 드래프트를 개최한다.

②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고자 하는 고교 및 대학졸업예정선수와 본 규약에 의거해 지명 참가가 허용된 신인선수는 KBO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라 지명일 30일 전까지 당해 연도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인선수는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소속학교 재학 중 받았던 징계, 부상 이력 기입) 제출시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와 생활기록부 등 KBO가 요구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KBO는 제2항에 따라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한 선수가 학교폭력으로 학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체육회, 기타 야구관련 경기주관 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그 제재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당 선수의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및 프로구단 입단을 제한할 수 있다.

⑤ KBO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인선수에게 선수계약 여부에 따라 지명 무효화 또는 참가활동정지, 실격처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⑥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가 구단 의무검진 등을 통해 심각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선수 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구단은 지명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소속선수 공시 전까지 KBO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총재의 승인을 득할시 지명 또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명 또는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구단은 다음 연도 신인 드래프트에서 동일 라운드 종료 후 추가 보상 지명을 실시할 수 있다.

- ⑧ 고교 및 대학졸업예정선수 중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인선수는 해당 드래프트일로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⑨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명 구단과의 계약을 거부한 선수는 해당 드래프트일로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단, 고교졸업예정선수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⑩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 제출 후 외국 프로구단과 계약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입단하지 못한 선수는 해당 드래프트일로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단, 지명에 참가하였으나 미지명된 이후 소속구단을 찾기 위해 외국구단과 협상을 진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⑪ 신인 드래프트는 제110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KBO는 필요시 별도의 방식에 의한 신인 드래프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인 드래프트의 방식이나 지명할 수 있는 선수의 수 등은 KBO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⑫ 총재는 지명된 신인선수의 명단을 검토한 후 이를 공시한다.

제109조 [1차지명] (삭제)

- 제110조 [지명]
- ① 구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 또는 중퇴한 선수 중에서 총재가 지정한 특정일에 지역연고에 관계없이 지명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인선수를 지명하는 구단의 순서는 전년도 KBO 리그 성적의 역순으로 한다.
 - ③ 지명은 제2항의 방식으로 11라운드까지 실시한다.
 - ④ 구단은 반드시 대학졸업예정선수를 1명 이상 지명해야 한다. 제7항에 따른 지명 선수는 본 항의 대학졸업예정선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신인선수 중 제107조 제1항, 제5항 소정의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수는 KBO가 정한 신인 드래프트일의 45일 전까지 KBO에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신청해야 한다.
 - ⑥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 중 KBO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선수가 구단에 입단하고자 하는 경우 제5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해야 한다.
 - ⑦ 2022년(2023 신인)부터 신인선수 중 대학야구연맹 등록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 2학년(3년제 대학교 2학년 포함)에 재학 중인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KBO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라 소속학교의 동의를 받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구단의 지명을 받지 못한 4년제 대학교의 2학년 재학 중인 선수는 졸업예정연도에 신인 드래프트에 다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4년제 대학교 2학년(3년제 대학교 2학년 포함)에 재학 중인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경우 본 규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졸업예정선수와 동일한 지위가 인정된다. 본 항에 따른 신인 드래프트 참가는 선수당 최대 1회로 제한한다.
 - ⑧ 고교졸업예정연도에 지명 받은 후 구단과 계약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선수는 제7항에 따른 신인 드래프트 참가가 불가하며, 대학졸업예정연도까지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다.

- 제111조 [지명의 효력]
- ① 구단은 자신이 지명한 신인선수에 대하여 제40조 소정의 계약교섭권을 갖는다.
 - ② 지명된 신인선수는 지명한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구단(국내외를 불문한다)과 선수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명한 구단이 계약교섭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4년제 대학교 2학년(3년제 대학교 2학년 포함)에 재학 중인 선수가 지명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대학졸업연도(증퇴시에는 대학졸업예정연도)로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예상졸업연도 이전에 군입대시 2년 연장).

제112조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① 신인선수를 지명한 구단은 지명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다음 해 지명일 7일 전까지 당해 신인선수에 대한 계약교섭권을 갖는다. 단, 제110조 제7항에 따라 신인선수를 지명한 구단은 지명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당해 신인선수에 대한 계약교섭권을 갖는다.

② 1라운드에 지명된 신인선수에 대한 제1항 소정의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은 그 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기간만큼 연장된다.

1. 신인선수가 대학에 진학하여 재학하는 기간
2. 신인선수가 실업 구단에 입단하여 실업 구단의 선수로 활동하는 기간
3. 신인선수가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하는 기간
4. 신인선수가 유급하여 소속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졸업할 때까지의 재학기간
5. 구단이 사실상 계약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총재가 인정하는 기간

제113조 [선수계약] ① 구단은 신인선수를 지명한 연도의 총재가 지정한 특정일자까지 자신이 지명한 신인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총재에게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고교졸업예정 신인선수 – 지명한 연도의 지명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
2. 대학졸업예정 신인선수 및 4년제 대학교 2학년(3년제 대학교 2학년 포함)에 재학 중 지명된 신인선수 – 지명한 연도의 12월 15일
- ③ 총재는 제2항에 따라 구단이 보고한 선수계약 체결불가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구단의 계약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인선수가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다시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4조 [계약교섭권의 포기, 상실 등] ①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자신을 지명한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신인선수가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다시 지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지명절차를 거치는 신인선수는 구단의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새로운 지명이 있을 때까지 다른 구단(국내외를 불문한다)과 선수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없다.

③ 구단이 여하한 사유로든 계약교섭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하여 당해 신인선수가 다시 지명절차를 거치는 경우 어느 구단도 당해 신인선수를 1라운드에서 지명할 수 없다.

제115조 [선수계약의 양도금지] 구단은 자신이 지명한 신인선수와 체결한 선수계약을 당해 선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수와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 [육성선수] ① 구단이 제11장에서 정한 신인 드래프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발한 선수를 육성선수라 한다.

② 육성선수는 제24조에 따른 선수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해연도 고졸 육성선수의 등록은 지명·미지명 포함 최대 5명까지로 한다.

제117조 [육성선수의 선발, 소속선수 등록] ① 구단이 선발할 수 있는 육성선수 중 당해 연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고졸 육성선수)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 연도에 신인선수를 8명 이상 지명한 구단 – 최대 5명
2. 직전 연도에 신인선수를 7명 이하 지명한 구단 – 최대 3명
- ②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를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1. 제99조에 따라 시즌 중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웨이버 선수
 2. 당해 시즌 중 웨이버에 의한 자유계약, 임의해지공시가 말소된 선수는 당해연도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3.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명 구단과의 계약을 거부한 선수는 해당

드래프트일로부터 2년간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4.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는 해당 드래프트일로부터 2년간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5.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 제출 후 외국 프로구단과 계약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입단하지 못한 선수는 해당 드래프트일로부터 2년간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단,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였으나 미지명된 이후 소속구단을 찾기 위해 외국구단과 협상을 진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4년제 대학교 2학년(3년제 대학교 2학년 포함)에 재학 중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했으나 구단의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

③ 육성선수는 매년 5월 1일 이후부터 소속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 규약 전문은 KBO 홈페이지 내 [KBO 규약](#) 확인